

지하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.

#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

자진신고 기간 : ~2022. 6. 30.(1년)까지

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·군·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. 이에 정부(환경부, 법무부)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,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자진신고 대상

- 「지하수법」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·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 하는 자
- 「지하수법」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·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 하는 자

## ■ 자진신고 방법

-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군청 지하수담당부서(환경위생과)에 제출

## ■ 자진신고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식	구비서류
허가대상 시설	• 지하수개발·이용허가신청서('지하수법 시행규칙' 별지 제2호 서식)	• 지하수영향조사서 • 토지 사용·수익 권리 증명서류 • 원상복구계획서(표준양식 활용)
신고대상 시설	• 지하수개발·이용신고서('지하수법 시행규칙' 별지 제7호 서식)	• 토지 사용·수익 권리 증명서류 • 원상복구계획서(표준양식 활용)

## ■ 자진신고 혜택

- 지하수개발·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
  - 허가대상 시설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별금(지하수법 제37조제1호)
  -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지하수법 제39조제1호)
- 이행보증금 면제 : 원상복구 이행확인서로 대체
- 서류 간소화 : 지적도·임야도, 시설설치도, 준공신고서, (최초) 수질검사서 면제

## ■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

-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「지하수법」에 따라 신고·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·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,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

■ 문의 : 지하수담당자(350-2525)